

군사사상의 학문적 고찰

진석용*

목 차

- I. 머리말
- II. 사상, 이론, 철학, 원칙
- III. 군사사상의 일반적 특징
- IV. 국제정치사상과 군사사상
- V. 국제규범과 군사사상
- VI.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군사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적 군사사상’의 ‘정립’을 요청하는 논문들도 속속 발표되었고, 군사교육기관에서 사용될 교재들도 출간되고 있다.¹⁾ 이러한 관심과 요청의 배경에는 군사문제와

*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1) 예를 들면, 김종두는 군사사상을 “군대의 정신으로 작용되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우리 군에도 장병 모두에게 자조적(自助的) 정신으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한국의 군사사상과 리더십』, 『군사논단』 제45호

직접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주국방’이 단순한 구호와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오랫동안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어왔으나, 지난 10년간 한미관계는 적잖은 마찰을 빚었고, 이러한 마찰은 국가안보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의 자립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안보를 우방국과의 군사동맹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홀로서기’를 할 것인지에 따라 군사전략은 물론, 무기체계, 부대편성, 병역제도에 이르기까지 군사문제 전반에 대한 접근법과 대안들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군사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의 통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현재에도 거의 모든 국정현안에 걸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남남갈등’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화기(和氣)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 어느 사회든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립은 있게 마련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엘리트’와 ‘서민’이 국정의 방향을 두고 갈등을 일으킨다. 한쪽에서는 더 많은 ‘자유’를,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더 많은 ‘평등’을 외친다. 이러한 차이와 갈등은 ‘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의견의 차이가 논쟁과 합의를 통해 해소되거나 해결될 경우 사회의 단결과 통합이 더욱 굳건해져서 그 사회의 생존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군사문제에 대한 여론의 분열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과의 전쟁에 직

(2006년 봄), 153, 173쪽), 이원봉은 “우리민족 특유의 군사적 인식과 전쟁수행신념”이 “한국 군사사상”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발굴, 정리하여 발전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한국 군사사상의 발전적 정립을 위한 제언』, 『군사논단』 제47호(2006년 가을), 164-165쪽).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군사사상사』(서울: 황금알, 2006)와 부사관 총연맹이 편찬한 『알기 쉬운 군사사상』(서울: 글로벌, 2007)도 유사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면했을 때 항쟁파(抗爭派)와 화친파(和親派)가 대립하여 갈팡질팡하다가 나라가 망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대북정책·국방개혁·전시작전권·핵무장 등 국방의 근간을 이루는 대사(大事)들은 일관된 원칙이나 철학 없이 상황논리에 의해, 혹은 정파 간의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거나, 방향이 자주 바뀔 경우 국방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고, 마침내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이 현실적인 당위의 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존재하고, 국방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도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군사행동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어떤 제도와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과 원칙의 차원에서부터 성찰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찰의 필요성이 ‘군사사상’에 대한 관심과, ‘한국적 군사사상’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에 발간된 『군사사상사』의 편자들은 이러한 배경들을 ‘자주국방의 화두’로 표현하면서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현재 국방 문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주국방’은 전쟁 전반을 자신의 아이디어에 의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철학과 이론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현대전쟁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군사기술’의 개발은 결코 경시될 수 없지만, 전쟁 수행 전반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전과 이론은 더욱 중요하다. 편자들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군사사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 군사사상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를 희망한다.”²⁾ 그 이듬해인 2007년 3월에 발간된 『알기 쉬운 군사사상』의 편자들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전

2) 온창일 외, 『군사사상사』(서울: 황금알, 2006), 6쪽.

쟁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국가나 집단의 전쟁은 나침반과 이정표 없이 표류하는 항해와 비교될 수 있다.”³⁾ 요컨대 군사사상에 관한 책을 발간한 편자들은 다양한 군사사상들을 소개하면서, ‘비전과 이론’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신과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i) ‘군사사상’은 어떤 종류의 학문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ii) ‘군사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주요한 국제정치사상들과 (iii) ‘군사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규범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II. 사상, 이론, 철학, 원칙

‘군사사상’은 ‘군사’를 종차(種差)로 ‘사상’을 유개념(類概念)으로 하는 인간의 사고 범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군사사상’이라고 할 때의 ‘사상’은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체계를 뜻한다. 따라서 ‘군사사상’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군사문제에 관한 통일된 판단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 판단체계 안에는 사실에 대한 경험적 인식도 들어있고, 현상에 대한 법칙적 인식도 들어있으며, 삶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신념도 들어있고, 이러한 인식과 신념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논리적 체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와 우주에 관한 형이상학적 체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현상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이론(theories)’, 논리체계와 형이상학적 체계를 ‘철학(philosophy)’이라고 하고, ‘사상(thoughts)’이라는 말은 삶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3) 부사관 총연맹, 『알기 쉬운 군사사상』(서울: 글로벌, 2007), 3쪽.

한편, 군사(軍事)는 전쟁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한다. 즉 사회현상으로서의 전쟁과 사회집단으로서의 군대 및 집단활동으로서의 전투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군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체로 군사력의 건설에 관한 영역과 군사력의 사용에 관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⁴⁾ 이러한 정의에 입각할 경우 ‘군사사상’은 군대를 보유하는 이성적 근거와 군사력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 및 군사력의 사용방법에 대한 통일된 판단체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규범적 판단이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사상’, ‘철학’, ‘이론’, ‘원칙’과 같은 어휘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 용어들은 매우 넓은 내포와 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따르다 하더라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또한 논자에 따라 각각의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설득적 정의가 시도될 수 있다. ‘사상’, ‘철학’, ‘이론’, ‘원칙’ 등의 용어들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간 이성(理性)의 창조적 사고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첫째, 예를 들어 전쟁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처방’이나 ‘정당화’에 관한 사고 차원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설정, 처방, 정당화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규범은 인간의 감정과 지성을 자극하며, 행동과 직결된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 혹은 ‘정치적 연장’이기 때문에, 이 차원의 사고는 정치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군사사상에서는 ‘처방’이나 ‘정당화’보다는 주로 전쟁의 수행방식, 즉 전략에 관한 문제가 중심적인

4) 군사학의 분야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연구대상이 된다.

둘째, 인간의 사고 자체를 ‘분석’하는 차원의 사고가 있다. 이 차원의 사고는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법칙의 추론에 필요한 개념과 논리를 제공하고, 규범적 명제와 사실적 명제 및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지닌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은 주로 이 영역의 사고를 가리킨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말이 인생이나 사회, 혹은 특정한 일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철학’과 구별하기 위해 ‘분석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는 반드시 ‘언어’를 얻은 다음에야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어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 현상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경험의 내용을 법칙적으로, 혹은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의 사고가 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정리된 정보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규칙이나 법칙,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가능성과 확실성 등을 추론하여 설명을 시도하고,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합목적적인 행동이 가능하고, 또한 처방도 가능하다. 이처럼 두 현상 또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예측 또는 처방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체계화되었을 때 이를 ‘이론’이라고 한다.

넷째, 위의 세 차원의 사고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인간의 합목적적 행동을 위한 지침으로 정리된 경우, 이를 보통 ‘원칙(principles)’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를 얻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 또는 지침은 ‘전쟁 원칙’으로, 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은 ‘부대관리 원칙’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10개 안팎의 ‘전쟁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

다섯째, 군사학적 지식들을 ‘교육용’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doctrines)’⁵⁾라고 부른다. 명나라 시대의 군사가 계획(揭曉)은 ‘교리’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일이 뜻하지 않게 닥치면 놀라게 마련이다. 마음이 놀라면 갑자기 피를 낼 수 없다. 패배의 징조다. …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반드시 두루두루 헤아려 일정한 법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 옛 선인들이 군대를 이끌다가 위험을 겪고 그 난관을 빠져나오면서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별다른 지략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미리 대비했을 따름이다.”⁶⁾ 여기에서 “두루두루 헤아린 일정한 법칙”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다. 교리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의 성격을 띠지만,⁷⁾ 사상, 이론, 철학, 원칙 등 군사학의 모든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다.

‘사상’, ‘철학’, ‘이론’ 등이 서로 다른 차원의 사고를 반영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론 없는 사상은 공상에 불과하고, 사상 없는 이론은 맹목이 되고 만다. 이 둘의 관계는 대체로 가치와 사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와 유사하다. 또한 논리를 결여한 사고는 사상이 될 수도 없고, 이론이 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모든 사상과 이론은 반드시 일정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사상’, ‘군사이론’, ‘군사철학’의 어느 하나로써 세 어휘를 모두 포괄하는 군사학적 사고의 통칭 혹은 총칭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특히 ‘군사사상’은 군사학적 사고의 총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처방과 정당화, 개념과 분석, 서술과 설명 및 예측은 그 나름의 기능과 구조 및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 5) 교리(教理)는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 체계’를 이르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군사학에서는 영어 ‘doctrine’의 역어로 사용된다. ‘doctrine’은 라틴어 ‘doctrina(가르침, 가르칠 내용)’에서 온 말이고, ‘doctrina’는 ‘doctor(교사)’에서 온 말이다. 영어에서 ‘doctrine’이라는 말은 의미가 확대되어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처럼 특별한 정책 원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 6) 『兵經百字』, 『預字』, 紫宇球, 『謀略』(들녘, 2003). 제3권 281-282쪽에서 재인용.
- 7) 합참의 군사용어사전에서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원칙과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적용시에는 (지휘관 또는 전투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III. 군사사상의 일반적 특징

군사사상을 위와 같이 정의할 경우, 군사사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신념이 다 그러하듯이, 군사사상도 구체적인 경험에서 생겨난다. 군사사상이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국가의 민족성, 전통, 역사, 지형 등 문화적 요인에 따라, 또한 국가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성립과정에서 군이 수행한 역할 등 국가이념에 따라, 국력이나 가상적(仮想敵)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각국의 국민·정치·군사 관계의 성격이나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사용태도(전쟁지도 및 전법)가 다른 것은 바로 이 군사사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군사사상은 군사학의 성격 규정(기술 혹은 과학)을 비롯하여, 전략과 전술,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 공격과 방어, 기동전과 진지전, 섬멸전과 지구전, 정규전과 비정규전 등의 사용방법, 더 나아가 육·해·공 3군 간의 비중 및 관계설정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문화’라고 정의할 때, ‘사상’, ‘이론’, ‘철학’ 중에서 ‘문화의존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상’이다.

둘째, 군사사상은 철학적 성격을 가진다. 군사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과 판단이 그 자체로 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판단이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전반적·보편적 사실들에 관한 판단으로 이행해야 하고, 단기적 판단에서 장기적 판단으로, 부분적인 이해관계에서 포괄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전체에 대한 통일적 사고로 이행할 때에만 사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사상은 철학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사상은 군사문제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는 개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주제와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사사상은 군사학적 지식이 지식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근거이자, 그 자체로 군사학적 지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사사상은 주어진 정치사상의 한계 안에서 형성된다. 정치사상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해 사고하기도 하고, 국가를 ‘넘어서’ 사고하기도 한다. 정치사상은 정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의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국가는 효과적인 정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사사상은 언제나 국가(또는 국가적 성격의 집단)를 전제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국가이다. 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집단이 군사를 보유하고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목적은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요, 영토와 국민을 없다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군사사상이 국가를 전제로 전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이 왜곡된 경우, 예컨대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여기에서 성립된 군사사상은 침략과 억압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고, 이에 저항하는 혁명세력이 등장할 경우, 이들의 군사사상은 혁명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넷째, 군사사상은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사사상은 경험적 인식과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판단에서 출발하지만, 전쟁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지침 또는 규칙의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그 국가 또는 민족이 가진 고유한 가치관이 반영된다. 여기에는 군사적 행동의 목적에 대한 선언이 들어있으며,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나 희생의 종류까지 들어있다. 이처럼 군사사상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지침에 따른 실천 자체는 군사사상의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핵무장을 통해 국가안보를 기하고자 하는 ‘핵전략사상’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이나 국제적인 마찰 없이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

은 별개의 것이다.

다섯째, 군사사상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들어 있다. ‘비전’이라는 말은 ‘철학’, ‘원칙’, ‘이론’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전은 순간의 횡단면에만 실재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사실들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융합한 형태로 제시되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기초한 장래와 이론으로 계획된 장래의 접점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은 현실과 역사를 통해 실재하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를 예견하고, 실천의 방향을 지시한다. 미래에 대한 예견은 단순히 ‘미래 무기’ ‘미래 전쟁의 양상’과 같은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예견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무대인 국제사회, 전쟁수행의 주체인 주권국가들의 성격, 군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성격에 대한 예견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전’은 군사학적 지식 가운데 ‘군사사상’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국제정치사상과 군사사상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는 주된 이유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외부’는 곧 국제환경을 의미한다. 국제관계(또는 국제사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군사학의 과제라기보다는 국제정치학의 과제이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전쟁의 위협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사상과 군사사상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제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세 개의 사상적 전통이 있다. 국제관계를 전쟁상태로 보는 ‘홉스적 현실주의’, 국제사회를 인류의 잠

재적 공동체로 보는 ‘칸트적 보편주의’,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는 ‘그로티우스적 국제주의’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사상적 전통은 국제정치학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다르고, 국제적 행위에 대한 처방도 다르다. 예컨대 국제사회의 현실을 ‘홉스적’ 전쟁상태로 이해할 경우, ‘세계정부’가 생길 때까지는 ‘자주국방’만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사상은 일반적으로 ‘칸트적 보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상적 전통의 특징을 영국 국제정치학자 헤들리 불(Hedley Bull)의 논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홉스적’ 관점은 국제관계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설명한다. 홉스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관계는 국가 사이의 완전한 갈등상황으로서, 전적으로 분배 게임, 혹은 제로섬 게임이다. 각 국가의 이익은 다른 국가의 이익을 배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국제적 활동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전쟁 그 자체로서, 전쟁을 보면 국제적 활동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는 마지막 전쟁이 끝난 후의 복구와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의 기간을 의미한다.⁹⁾ 국제적 행위에 대한 홉스적 처방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들의 목표를 어떠한 도덕적·법적 제한 없이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는 국가가 일종의 도덕적·법적 진공상태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도덕과 법에 대한 관념은 오직 사회의 맥락 안에서만 유효한데 국제생활은 사회의 범위 밖에 있다. 어떤 도덕적·법적 목표가 국제정치에서 추구된다면, 이것은 국가 그 자신의 도덕적·법적 목표일 뿐이다. 홉스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행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원리는 이해타산(prudence) 혹은 편의(expediency)의 규칙이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편리하다면 지켜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8) Hedley Bull,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23-26.

9) 토머스 홉스, 전석용 역. 『리바이어던 1』(서울: 나남, 2007), 169-172쪽.

파기될 것이다.

둘째, 이와 정반대편에 있는 ‘칸트적’ 관점은,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성격을 국가들 간의 갈등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시민인 개개인들의 초국가적 사회적 연대에서 찾는다. 칸트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관계가 겉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 관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경우 주권국가 체제를 일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이 견해에 따르면, 인류 전체로 구성되는 공동체에서는 모든 개인들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홉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협동 게임 혹은 비 제로섬 게임이다. 각국의 지배계급들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하나 이는 현존 주권국가 체제의 표면적 또는 일시적 차원에서 그러할 뿐이다. 칸트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적 활동 전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사회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 이데올로기의 수평적 갈등이다. 두 진영이란 인류의 내재적 공동체의 수탁자와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말한다. 칸트적 견해는 국제관계에서도 국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도덕 명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도덕 명령은 국가들 사이의 공존이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국가 체제의 전복, 혹은 세계시민사회로의 대체를 요구한다. 칸트적 견해에 의하면, 인류 공동체는 국제정치의 중심적 실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목표 또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더 높은 도덕 명령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들 간의 공존과 사회적 교류를 지탱하는 규칙은 무시되어야 한다.

10) I. Kant,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ical Intent”(1784), in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pp. 29-39. 그러나 칸트는 “Perpetual Peace” (1795)에서는 ‘공화주의’ 국가들의 연맹이라는 대체 목표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책, pp. 107-139

셋째, 그로티우스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 사이에 위치한다. 그로티우스적 전통은 홉스적 전통과는 달리, 국가들 사이에도 ‘사회’가 존재하고, 따라서 갈등을 제한하는 공통의 규칙과 제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칸트적 관점과는 달리, 주권자인 국가가 국제정치的主要 실체라는 홉스적 전제를 수용한다. 즉 국제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적 견해에 따르면,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완전한 충돌하는 것도 아니요,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분배적이고, 부분적으로 생산적인 게임이다. 그로티우스적 견해에 따르면, 국제적 활동 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국제적 활동은 국가들 간의 전쟁이나 국가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수평적 갈등이 아니라 무역, 즉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경제적·사회적 교류이다. 국제적 행위에 대한 그로티우스적 규칙은 모든 국가들이 상호간에 그들이 형성한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이해타산 혹은 편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지만, 도덕과 법의 명령에 의해서도 구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들의 체제의 전복이나 인류의 보편적 공동체에 의한 주권국가의 대체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들의 사회에 있어서 공존과 협력의 요건을 수용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군사사상들은 국제정치の本질을 홉스적 관점에서 보았으나, 근대 주권국가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로티우스적 국제사회관이 조금씩 현실성을 얻기 시작하였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국제사회에 대한 주류 사상으로 부상하였다. 핵무기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인류 공멸’의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은 더 이상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무정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무정부상태는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쟁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홉스가 말한 것처럼, “전쟁의 본질은 실제 전투행위의 존재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 외의 기간이 평화이다.”¹¹⁾ 즉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제관계는 전쟁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주권국가들은 평화시에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상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홉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군주나 통치자들은 대외적 독립이 위협받지나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으며, 무기를 들고 서로 노려보는 검투사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국경지대에 요새를 건설하고, 무장 수비대를 배치하고, 정보원을 침투시켜 주변국의 정세를 염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 준비태세인 것이다.”¹²⁾

또한 오늘날에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전쟁의 결과가 (클라우제비츠 식으로 말하자면)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결과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전쟁에서의 패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¹³⁾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멸망하는 “절대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는 일부 국가들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개발 제한’이나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국제관계는 “가장 약한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홉스의 ‘자연상태’와 매우 유사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한

11)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1』(서울: 나남, 2007), 171-172쪽.

12) 위의 책, 173-174쪽.

13) 클라우제비츠, 김홍철 역. 『전쟁론』(서울: 삼성출판사, 1983), 60-62쪽.

개인의 죽음이 단 한 번의 공격행동에 의해 갑자기 생겨날 수 있고,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전쟁으로 한 민족이 몰살되거나 혹은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극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V. 국제규범과 군사사상

역사상 군사이론가들에 의해 발전된 군사사상들은 대체로 승전(勝戰)의 방법, 즉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국가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패배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므로 군사사상은 대부분 전략사상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사회’에 편입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에 관한 다양한 규범들을 국제법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이 국제법은 모든 나라의 군사사상이 반드시 전제로 삼아야 할 규범이며, 적어도 모든 국가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규칙이기도 하다.

국제법에는 국제관습법과 조약이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국제공동체의 신념(*opinio juris*)을 기초로 이루어진 불문율로서 성문의 규정은 없다. 조약법은 국가간의 합의(*agreement*)에 의해 성립한다. 조약법은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정치와의 관련이 보다 더 밀접하고, 따라서 정치의 영향이 국내법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아직 권력정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법의 생성과 발전에는 강대국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법은 약소국에 대해 더욱 위력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통하여 국제법의 국내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제법의 국내적인 효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⁴⁾

군사력의 사용에 관한 국제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력행사의 명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正戰法(jus ad bellum)이고, 또 하나는 무력분쟁 중의 행위의 공명정대성을 판단하는 交戰法(jus in bello)이다. 즉 정전법은 전쟁의 이유(why)에 관한 것이고, 교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how)에 관한 것이다.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정전법은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고¹⁵⁾, 교전법(law of war)은 다수의 국제관습법과 국가 간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보통 전시국제법 또는 전쟁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타국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행사”와 “유엔의 목적(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배치되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 또는 파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엔이 무력제재를 포함한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독자위권 혹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엔 헌장에 따르면, 무력행사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무력제재)인 경우와,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자위전쟁)인 경우에는

14) 우리 헌법에서도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1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5) 유엔 헌장 제2조3항, 제2조4항, 제42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가 이에 해당한다.

정당한 것으로, 따라서 적법전쟁(legal war)으로 인정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무력행사는 “침략전쟁(aggressive war)”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법전쟁(illegal war)”으로 규정되고, 국제법상 “평화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peace)”를 구성하게 된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무력제재)에 관한 권한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위임되어 있다. 침략행위¹⁶⁾에 대한 유엔의 무력제재는 국제적 경찰행위이므로 통상적인 전쟁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경찰력의 집행 자체가 사실상의 전쟁행위이며, 또한 전시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가는 단독자위 또는 집단자위의 자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자위권의 행사는,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자위권의 행사 시점은 상대가 무력공격을 위한 행동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무력공격이 개시(launching of an attack)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작전이 전개(military deployment)된 시점을 말한다. 그러나 상대의 공격행동이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공격의도를 추측하여 행하는 예방공격은 적법한 자위권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집단자위권은, 일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대상이 아닌 나라가 피공격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격국에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전시국제법은 무력행사의 정당성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무력분쟁 중의 행위를 규율한다. 이 법은 ‘전쟁’ 상태의 존재에 대한 선언 또는 공식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 성격을 지닌 모든 무력분쟁에 적용되

16) 침략이란 한 국가가 타국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침해할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침략(aggression)에는 영토침입(invasion), 타국영토에 대한 무기의 사용, 봉쇄(blockade), 타국의 군사력에 대한 무력공격(armed attack), 타국에 대한 무장부대의 투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는 법이기 때문에 무력분쟁법(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 하기도 한다. 전시국제법은 종래에는 국가 또는 교전단체를 주체로 하는 전쟁에만 적용되었으나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은 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이외에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국제적 성격을 지닌 모든 무력충돌”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또한 내란(civil war)¹⁷⁾이나 국내소요(internal disturbance)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전시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전시국제법의 주된 목적이 인도주의에 있는 만큼, 전시국제법 중 인도적 원칙은 적용된다(제네바 4개 협약 각 3조). 그러나 폭동(riot)이나 고립적·산발적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소요¹⁸⁾는 “무력분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시국제법의 주된 목적은, 무력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맹목적이고 과도한 파괴를 막고, 폭력을 오로지 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⁹⁾ 그러므로 군사

17) 내란이란 한 국가 내에서 대립하는 실력단체의 무력적 투쟁상태를 말한다. 내란은 보통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단체의 무력공격이나 국가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18) 폭동이나 고립적·산발적 폭력행위와 같은 소요는, 군사력 또는 조직화된 무장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군사작전과는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시작 당시 일정한 지도자가 없고, 폭력행위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19) 정복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중국에도 오늘날의 전시국제법에 해당하는 ‘군례’가 있었다. 예컨대, 사마법은 ‘전도(戰道)’의 예로 ‘불가상(不加喪)’의 원칙(상대국이 국상을 당한 때에는 공격하지 않는다)과 ‘불인홍(不因凶)’의 원칙(상대국이 재해를 입은 때에는 공격하지 않는다)’을 들고 있으며, 전투시 지켜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패주하는 적은 백보 이상을 추격하지 않으며, 삼일 이상을 추격하지 않는다(禮德: 逐奔不過百步, 縱綏不過三舍). ②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는 공격하지 않으며, 부상자는 피아를 막론하고 돌본다(仁德: 不窮不能而哀憐傷病). ③적군이 전열을 정비한 후에야 공격한다(信德: 成列而鼓, 不鼓不成列). ④전투의 목적이 정의를 세우는데 있어야 하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義德: 爭義不爭利). ⑤항복한 자는 용서한다(勇德: 又能舍服, 降者不殺). ⑥전투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한다(智德: 知終知始). 이 외에도 ‘부상당한 전투원은 공격하지 않는다(不重傷)’, ‘연로한 전투원은 사로잡지 않는다(不擒二毛)’ 등과

적 가치가 거의 없는 비전투원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금지된다. 무력분쟁 중에 발생하는 잔인성과 증오와 고통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교전당사국 간의 선린관계의 재수립과 항구적인 평화의 회복은 그만큼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전시국제법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시국제법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의 원칙(The Principle of Necessity): ‘필요의 원칙’은 “적의 공격 또는 공격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적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항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군사적 필요(Military Necessity)’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력분쟁시 이 원칙에 따라 무력을 행사할 경우 군사적 목적 수행의 합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오용될 경우, ‘군사적 임무 달성의 필요성’을 내세워 과도하고 불법적인 폭력사용이 정당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적수단(害敵手段)의 선택에 있어서는 필요한 강도, 기간 및 범위 내에서만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균형의 원칙’이 있다.

(2) 균형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군사적 필요’에 의한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낳는다. 또한 증오심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과잉폭력이 행사되기 쉽다. ‘균형의 원칙’은 이러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폭력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무력공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도한 파괴와 살상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3) 구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구별의 원칙’은 “전투원이 아닌 비전투원을 군사적 공격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전투원”이란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을 말하는데, 여기서 군대란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은 지휘관 휘하에 있는 조직된 모든 무장병력, 집단 및 부대”를 말한다.²⁰⁾ ‘균형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은 군

같은 세부적인 행동규칙들이 있었다.

사적 목적의 달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파괴, 불필요한 고통, 과도한 상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두 원칙을 합하여 ‘인도주의 원칙(The Principle of Humanity)’이라고 하기도 한다.

(4) 기사도의 원칙(The Principle of Chivalry): 교전당사국들은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수단과 방법 및 행위를 금지하여 공명정대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배신행위금지(Prohibition of Perfidy)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배신행위란 “무력충돌시 적으로 하여금 자신이 국제법 규칙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게 한 다음” 적의 살상 또는 포획을 기도하는 행위를 말한다.²¹⁾ 그러나 적을 오도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의도된 위장, 유인, 양동작전, 오보의 이용 등과 같은 전쟁계략(Ruses of War)은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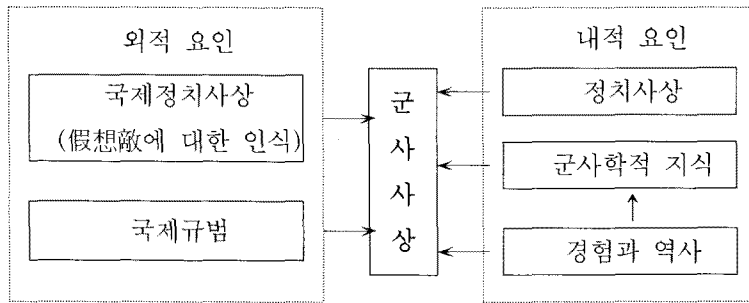
VI. 맺음말

군사사상의 학문적 성격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20)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 제1의정서 제43조(1).

21)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 제1의정서 제37조(1). 동조에 예시된 배신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 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 (b) 상처나 병으로 인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c)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의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c) 유엔 또는 중립국, 비전쟁당사국의 부호, 표창, 제복을 사용함으로써 피보호 자격으로 위장하는 것.

22)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 제1의정서 제37조(2).



이 중에서 내적 요인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외적 요인 중 가상적에 대한 인식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규범은 모든 국가의 군사사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약은 약소국일수록 크게 작용한다. 한국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와 정립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추가 의정서

김종두, 『한국의 군사사상과 리더십』, 『군사논단』 제45호(2006년 봄)

이원봉, 『한국 군사사상의 발전적 정립을 위한 제언』, 『군사논단』 제47호(2006년 가을)

부서관 총연맹, 『알기 쉬운 군사사상』(서울: 글로벌, 2007)

사마양저, 『사마법』

은창일 외, 『군사사상사』(서울: 황금알, 2006)

유엔 헌장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紫宇球, 『謀略』(들녘, 2003).

Bull, Hedley,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Clausewitz, Karl von, 김홍철 역. 『전쟁론』(서울: 삼성출판사, 1983)

Hobbes, Thomas,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서울: 나남, 2007)

Kant, I.,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ical Intent”(1784), in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A Scientific Consideration of Military Thought

Jin, Seok-Yong

This article deals with military thought in general. First I tried to distinguish 'thought' from 'theory', 'philosophy', and 'principle'. Thought means the act of thinking about or considering something, an idea or opinion, or a set of ideas about a particular subject, e.g. military affairs in the present discussion. Theory means a formal statement of the rules on which a subject of study is based or of ideas which are suggested to explain a fact or event or, more generally, an opinion or explanation. Philosophy means the use of reason in understanding such things as the nature of reality and existence, the use and limits of knowledge. Principle means a basic idea or rule that explains or controls how something happens or works.

Chapter 3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houghts into five points: (i) it is closely related with concrete experiences of a nation; (ii) it includes philosophical and logical arguments; (iii) it relies heavily on the political thought of a nation; (iv) it includes necessarily value-judgments; (v) it contains visions of a nation which are not only descriptions or explanations of military affairs, but also evaluations and advocacies.

Chapter 4 considers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s

* Professor, Dept. of Politics and Mass Communication, Daejeon University.

to military though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modern states system there have been three competing traditions of thought: the Hobbesian or re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ate of war; the Kantian or universalist tradition, which sees at work in international politics a potential community of mankind; and the Grotian or internation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taking place within an international society.

Chapter 5 considers the law of war, which is a body of law concerning acceptable justifications to engage in war (*jus ad bellum*) and the limits to acceptable wartime conduct (*jus in bello*). Among other issues, modern laws of war address declarations of war, acceptance of surrender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military necessity along with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and the prohibition of certain weapons that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Key words: military thoughts, theories, philosophies, principle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s, law of war